

전염성 질병, 병가처리 방법은?



“A형 독감으로 자택에서 5일간 격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, 격리치료기간 동안 입원병가가 가능한가요?”

✓ 법정감염병인 독감의 경우 입원하지 않아도 진단서에 명시된 격리치료 필요기간 만큼 입원 시와 동일하게 입원병가로 복무처리가 가능합니다.

➡ 병가제도 안내

병가는 업무외적인 부상, 질병 치료를 위한 휴가로 연간 최대 70일(유급)까지 부여

■ 병가의 종류

- 입원병가: 입원치료를 요하는 병가(입원일수와 퇴원일 기준 주 1회 이상 통원한 경우 통원일까지)
- 일반병가: 입원병가를 제외한 병가(사용일수 만큼 연차휴가 선 차감)

■ 병가 시 급여/수당 차감 항목

- 병가사용일수 만큼 급식통근비 차감(기준급, 역량급, 성과급 등은 정상 지급)
- ※ 휴가(연차휴가, 청원휴가, 병가 등) 일수가 월 10일을 초과할 경우 휴가일수 만큼 초과근무수당 차감

☞ 주요 법정감염병 : 결핵, 홍역, A형간염, B형간염, C형간염, 파상풍, 독감(인플루엔자) 등

❓ 무엇이든 물어보세요

Q. 2020년
대부제도 안내

“올해 신설된 긴급생활자금, 금융기관 대부이자 지원제도의 경우 대부금 전액 상환 시 대부 재기회가 주어지나요?”

✓ 아니요, 올해 신설되는 대부제도의 경우 대부 재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, 가계안정자금과 주택자금 대부 한도액 전액 상환 시에만 1회에 한해 대부 재기회가 주어집니다.

■ 대부 재기회 부여시기 변경 안내

- (기존) 대부 한도액까지 대부 후 대부금 전액 상환 즉시 대부 재기회 부여
- (변경) 대부 한도액까지 대부 후 대부금 전액 상환 시 직전 대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대부 재기회 부여

Q. 반차휴가
사용일수 확대

“올해부터 반차휴가 사용가능일수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연간 며칠까지 반차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?”

✓ 올해부터 반차휴가는 연간 최대 7일(14회)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.(기존 5일/10회)

※ 반차휴가 사용일에는 통근비(6,000원)만 지급되며, 급식비(7,000원)는 미지급됩니다.